

우리기관 운영규정 개요

1.개요총괄

운영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참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참조
이용료 산정방식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참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참조
기타	자세한 운영규정은 첨부된 우리기관 운영규정을 참조하세요

3.기본정보 및 연혁

-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휴가 등)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명	새희망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22915500123			
대표자	박영				기관장				박영			
지정/신고일자	2011.11.03(동일)				지정형태				■ 방문요양			
인력현황	관리 책임 자	사무 국장	사회 복지 사	간호 사	간 호 조 무 사	치 위 생 사	물 리 치 료 사	작 업 치 료 사	요양 보호사 1급	요양 보호사 2급	사무원	기타
38	1		1						36			
기관연락처	062-673-0278				이 메 일				pqq0511@nate.com			
팩스번호	062-673-0276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사이트 블로그			
사업장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56번지 모아2차상가2층 203호											
주차시설	주차는 모아야파트 105동 뒤 편에 주차하시면 편리합니다.					교통편		남구 방림동 모아2차 상가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37번,28번,50번,76번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봉선동 모아2차를 찾으시면 편리합니 다.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및 인근지역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수가	본인부담	구분	수가	본인부담	구분	수가	본인부담
30분	14,530	2,180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11,171	30분 미만	36,110	5,417
60분	22,310	3,347						
90분	29,920	4,488						
120분	37,780	5,667	차량이용(가정 내)	67,150	10,073	30분~60분 미만	45,290	6,794
150분	42,930	6,440						
180분	47,460	7,119						
210분	51,630	7,745	차량 미 이용	41,930	6,290	60분 이상	54,490	8,174
240분	55,490	8,324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전문인배상책임 가입현황

험 회사명	가 입 상품명	보 험 가입일
-------	---------	---------

6.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 그램 운영 사항	종류	제목	대상(명)	주기(시간)	장소

7.급여비용 가산지급현황

급여비용가산 지급기관	■예 □아니오
급여비용가산 지급기관(공대 동의여부)	■예 □아니오